

수원지방법원 2020. 4. 21 선고 2020가단2256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등말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6. G

7. H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0. 4. 21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[별지 1] 목록 기재 부동산 중 [별지 2] 표의 "지분"란 기재 피고별 해당 각 지분에 관하여,

가.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0. 5. 2. 접수 제276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,

나.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0. 2. 24. 접수 제1089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각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[별지 3]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김현희

별지